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25 | November 2024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3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6

- [심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인용)
- [예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 [예규]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

11

- [예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12

- [예규]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 [예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세법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6802, 2024. 10. 22.

[사안] 청구법인은 2007. 2. 26. 설립되어 부동산개발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12. 27. 청산하였는데, 2016. 3. 31.~2019. 5. 31. 기간 동안 상업용 건물(“쟁점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19. 4. 12.)한 후, A컨소시엄에 매각하였음. 청구법인은 2019. 10. 22. 2019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배당결의를 거쳐 2019. 10. 23. 배당을 실시한 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2 제1항(“쟁점조항”) 제9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 제9호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쟁점조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2는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그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쟁점조항을 소득공제의 성립요건으로 보아 특정 사업연도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영속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소득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의 기간과세 원칙과 다소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명목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귀속되는 주주 등 투자자에게 명목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순자산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라 할지라도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쟁점조항 제9호는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조항 제9호가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로 이관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성격을 감안’한 것이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특혜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배당이 실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조항 제9호는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하는 요건으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바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는 ‘자산관리회사로

[판단] 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계속 시행령 제86조의 2 제6항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적어도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부터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이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배당을 실시하여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오로지 배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소득공제에 있어 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자 하였던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코멘트]

- 대상심판례의 '심리(審理)'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甲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11.~2016. 11. 11., 2017. 3. 31.~2019. 3. 8. 재직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2016. 3. 1.~2016. 11. 11., 2017. 3. 31.~2018. 12. 31.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
-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이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기와 관련된 각 당사자와 대상심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①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의 기간과세원칙) ☞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2019 사업연도에는 甲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바 없음.** →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이사 요건 충족 0

② 처분청: 쟁점조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 시부터 배당 시까지(∵ 쟁점규정 제9호 바목의 문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계속적으로'……) ☞ 甲은 2016. 3. 1.~2016. 11. 11., 2017. 3. 31.~2018. 12. 31.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 →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이사 요건 충족 X

③ 대상심판례: 적어도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부터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구 법령 제86조의 2 제6항의 문언:……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한 후에 이사……가……제9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청구법인의 설립일=2007. 2. 26.** → 구 법령 제86조의 2 제5항 제5호에 따른 신고시기: 늦어도 2007. 4. 26. → 甲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시기: 2016. 3. 1. 이후 →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이사 요건 충족 X

[예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 10.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코멘트]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은 제1항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는 본문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위 본문의 예외, 곧 제1항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결국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특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괄호 생략)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갑설), 그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배제되는지(을설), 아니면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배제되는지(병설)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심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인용)
감심-2023-360, 2024. 10. 17.

[사안] 청구인은 2018년 8월 설립된 벤처기업인 A사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계 325,000,000원을 출자하였고, 2021. 5. 14. 2020년 종합소득금액(349,335,960원)의 100분의 50인 174,667,980원을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이 사건 소득공제”)로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 43,329,986원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2023. 5. 10. 청구인이 이 사건 소득공제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2018년, 2019년, 2020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각각 산정한 131, 845,000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종합소득금액(349,335,960원)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산정한 174,667,980원으로 과다하게 공제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08,900원을 경정하여 부과·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함.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조특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한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2018~2020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선택한 과세연도(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A사는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2019. 9. 10.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으므로 인증 전에 청구인이 출자한 금액 중 2018년 출자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A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은 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과세연도로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운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은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법자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구 조특법 제16조 제1항이 소득공제 기간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하여 출자자로 하여금 공제기간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자로서는 법이 정한 기간 중에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판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_계속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해당 과
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코멘트]

- 대법원은 “소득공제 한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예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서면-2024-법인-0354, 2024. 7. 13.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32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코멘트]

- 구 조특법 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항 제1호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의 하나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2에 따르면,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한편, 2022. 12. 31. 조특법 개정 시 '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현행 법상 적용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본임.

[예규]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91, 2024. 7. 30.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조특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유예기간 배제 사유를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도 조특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유예기간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동일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재차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분할을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해당 규정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상 분할설립을 새로운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음(조심 2021중3830, 2022. 8. 11.).

[예규]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 10. 8.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 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코멘트]

-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제1호는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조특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3항은 위 나목에 따른 자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3항은 위 조특령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하나로 제4호에서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유형별 ‘구분’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창고시설 등’의 경우 그 적용범위의 하나로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의 창고시설의 경우 ‘가목’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를, ‘다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열거하고 있음.
- 대상예규는 물류터미널 중 창고기능을 하는 시설은 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4호의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서 제4호의 창고시설 등에 관한 괄호규정인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됨.

[예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 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 7. 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코멘트]

- 2021. 12. 28. 조특법 개정 시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해당 부칙(법률 제18634호)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는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202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바, 해당 개정 전 투자금액이 추가공제 금액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예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 10. 24.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코멘트]

-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한 바 있음(부가 46015-1779, 1994. 9. 1. 등). ☞ **대상예규의 전문은 국세청 예규와 달리 판단함.**
-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사건 잔액”)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잔액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 **대상예규의 전문과 같은 취지임.**

소득세법

[예규]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 10. 23.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감액배당금”,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임.

[코멘트]

-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8호에 따라익금 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가 조정되어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괄호가 추가됨.
-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배당소득의 범위) 제26조의 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주주와 달리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감액배당의 범위에 아무런 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함.
- 결국 대상예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괄호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본 것임.

[예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 11. 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코멘트]

- 과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4팀-1954, 2006. 6. 23. 등).
- 기재부는 위 국세청 예규와 달리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 12. 27.), 대상예규는 종전 기재부 예규(조세정책과-2516)를 변경한 것임.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